

꿈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며 슬기로운 어린이

2021

JEONGEUPNAME EDUCATION

정읍남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자료

순	내용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2	학교 폭력 예방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4	가정폭력 예방 교육
5	인권 교육
6	자살 예방 교육
7	감염병 예방 교육
8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9	2021학년도 학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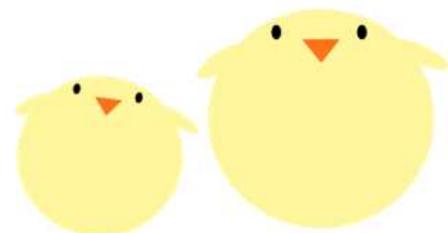
정읍남초등학교

홈페이지 : <http://ju-nam.es.kr>

주소 : 전북 정읍시 남산5길 25

교장실 : (063)535-2943 교무실 : (063)535-6660

행정실 : (063)535-2141 팩스 : (063)532-0643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의하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공교육 정상화법 제5조, 제7조 참고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진로진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활동 참여만으로도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시·운영해야 하며, 관찰, 상담, 정보제공 등으로 학생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고 학교생활에 임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 정상화법 제6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 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타 사항-적용 배제 관련

가. 영재 교육기관, 조기 진급자, 적용 배제 교과(군),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적용 배제되는 교과(군)은 체육·예술 교과(군) 등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

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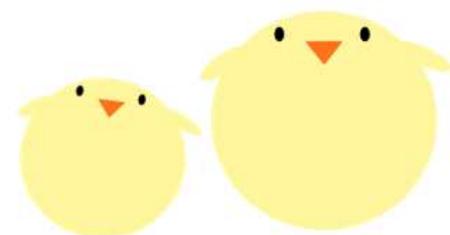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2.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유형 제대로 알아!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죽을래” 등)과 문자메세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갈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걸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우리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

1.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년	일시	외부강사교육	교육 기관	담당교사 학급활동
1학년	2021.4.12.(월)	아동폭력예방 CAP교육 (2시간)	초록우산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동 화를 읽고 인상 깊은 장면 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자유 롭게 표현하기(4시간)
2학년				
3학년	2021.4.13.(화) 2021.4.16.(금)	학교폭력예방 No bullying교육 (4시간)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아보기(2시간)
4학년	2021.4.15.(목)	학교폭력예방 법교육(1시간)	법무부 법사랑사이 버랜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아보기(5시간)
5학년	2021.4.14.(수)			
6학년				

2. 친구사랑주간 행사 운영

- 2021년 5월 10일(월) ~ 5월 14일(금)

3. 학교폭력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 각 학년별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해 6시간 이상 운영

- 6역량(공감, 자기존중,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으로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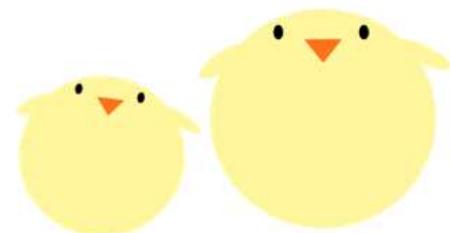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 폭력신고전화: 117	*정읍남초등학교: 063-535-6660
* Non-stop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2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	
* 학생고충상담: 1588-7179 (가까운 지역교육청으로 자동 연결)	



3. 학부모와 함께 아동학대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 학대의 정의

- ☞ ‘아동’ 이란 :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 1호)
- ☞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3호)
- ☞ ‘아동 학대범죄’ 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4호)

1) 형법에 의한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3)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아동 학대와 학교폭력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의 주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없음
가해의 객체	아동 (18세미만)	아동 (18세미만)	학생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해의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되는 아동학대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 학대 발견시 조치 요령

1	발견즉시 112 신고, 증거 확보	
2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학부모 연락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기관 연계 및 학적사항 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3	피해학생 회복지원,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4. 학부모와 함께 가정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가정 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수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 폭력의 유형

	가정 폭력의 유형	폭력의 예시
1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 하기 등
2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학대, 무기 전시 등
3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4	고립	배우자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5	부인,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6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7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8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가정 폭력 신고 및 도움요청

여성 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65일 24시간 개입 상담 ·긴급 피난처 운영: 7일 이내 긴급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13개국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지원 ·이주여성쉼터 연계	·평일: 9:00 ~ 18:00 정기적인 상담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운영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부부 및 집단 상담 ·지역 관련 기관 연계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자녀와 함께 생활 (의,식,주 무료 제공) ·학습 지원(비밀 전학 등) ·자립 지원(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5. 인권 교육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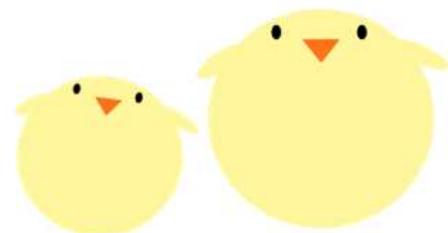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인권지수는?

내 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6개 이상 인권 지킴이 · 3개-5개 인권 노력이 · 2개 이하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지 않는다.			





의사소통,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 나 -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 나 - 전달법(I-Message) 의 3가지 요소

1.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사실)
2.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
3.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느낌)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가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 (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 (느낌)

☺ 나 - 전달법(I-Message) 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내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 (사실)

☼ 책상이 깨끗해져서 (영향)

☼ 내가 기분이 참 좋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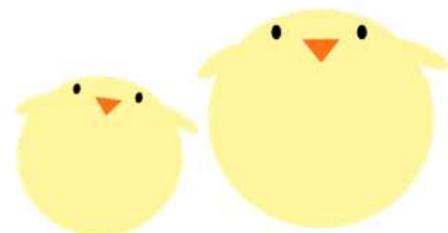


“너” 전달법

VS



“나” 전달법



6. 자살 예방 교육

1. 자살의 개념

자살이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다. 청소년기의 자살은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해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대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2. 청소년 자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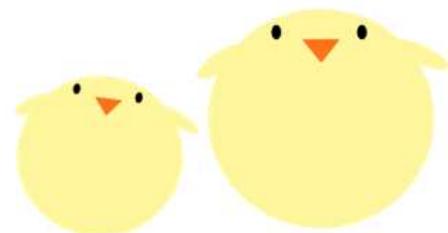
발달 단계상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이다.	-전두엽 발달이 완전하지 못하여 종합적 사고가 어려운 시기 -신체적, 정서적 많은 변화로 인한 격동의 시기 -지적변화로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도전하는 시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 혼란의 시기 -학교생활과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시기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이 경우가 많다.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질 때 충동적으로 선택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이나 꾸중을 들을 때 충동적으로 선택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살동기를 갖는다.	-자살은 준비하던 중 “나가 죽어라” 라는 말이 방아쇠가 되어 바로 시도 -고통의 끝이나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선택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합리화하는 경향 -남을 조정하거나 보복하려는 동기로 선택
동반자살 및 모방자살 가능성이 있다.	-피암시성이 강함 -자살사이트를 통한 관심 및 연예인이나 추종자의 죽음으로 연쇄 자살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판타지 소설류나 인터넷 게임의 영향 -죽음을 문제해결방법으로 잘못 생각 -대중매체가 전하는 자살소식을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임

<자살경고 표시>

언어적 표시	비언어적 표시
<input type="checkbox"/> 자살과 죽음에 대해 말하거나 농담을 함 “더 이상은 못 하겠어” “끝내버리고 싶어” “이제 모든 걸 끝낼거야” <input type="checkbox"/>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함 <input type="checkbox"/> 죽음이나 자살사이트에 심취함	<input type="checkbox"/> 약이나 위험한 물건을 모아서 감추어 둠 <input type="checkbox"/> 자살에 관련된 낙서나 글을 쓰는 행동 <input type="checkbox"/>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유언장 작성 <input type="checkbox"/>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 정리정돈 <input type="checkbox"/> 조퇴, 지각, 무단결석 등이 잦음 <input type="checkbox"/> 평소와 다른 기분 및 행동변화 등

3. 학부모가 갖춰야 할 태도

- 자녀들에게 충고를 강요하지 않기
- 비판하기에 앞서 경청하고 이해하기
- 의사소통의 연락망을 계속 열어 놓기
-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갖기
- 학생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자녀들의 자살생각에 대해 개방적으로 질문하기
 - ☞ 학생이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 “자살을 할 계획이 있니?”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시도해 본적이 있는가?”,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죽는 게 더 낫겠구나 하고 바란 적이 있는가?”,
“자신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자녀들의 행동이 염려된다면 전문가의 자문 구하기
- 다양한 긍정적인 대처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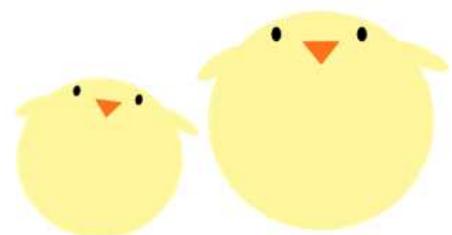
4. 학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태도

- “바보같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라고 묻지 않기
- “너 자해하려는건 아니겠지?”라고 묻지 않기
- 혼자 두는 것
- 두려워하는 것
- 문제를 무시하는 것
- 충격을 받거나 당황해하는 것
- 자살에 대해 도덕적인 논쟁을 하는 것
- 비판, 충고, 설교 하는 것
-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5. 위기 극복을 위한 도움청하기 WHO방법

1. Who(누구, 사람) : 주변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세요.
2. How(어떻게, 방법) :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3. Organization(협회, 기관) :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받으세요.
 - 청소년 긴급 전화 (국번 없이) 1388
 - 한국 생명의 전화 1588-9191 / 사랑의 전화 1588-2525
 - 자살예방 Hotline 1577-0199 /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 응급의료정보센터 (국번 없이) 1339

※ 관련 징후가 보이는 경우 담임선생님 및 학교로 연락주시면 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7.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 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히 손 씻기 지도해주세요.(1830 손 씻기)

4 코로나19 예방

<가정에서 협조사항>

1. 가정 내 건강관리

-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63-120), 정읍선별진료소(539-6734)로 문의 및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 등교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3. 등교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 ▪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학교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동행 ▪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

※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하여 최소 3~4일간 등교중지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기타결석처리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¹⁾ 신청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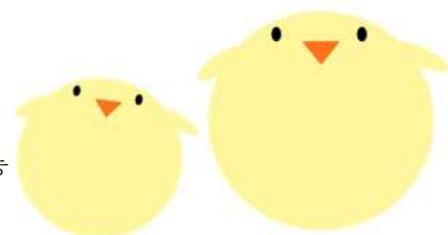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서 방문확인, 검사결과 확인서 등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1) 초·중·고: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6.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유증상자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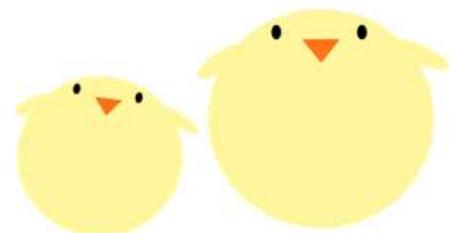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세요.
3.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① 콜센터(☎1339, ☎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고위험군 행동수칙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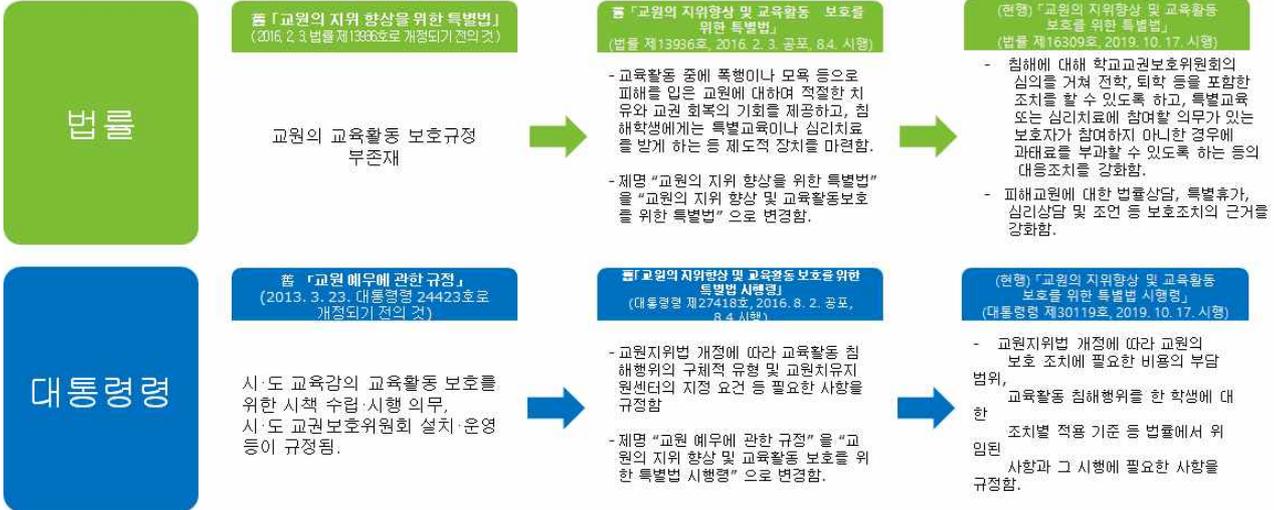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8.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가. 교원지위법(약칭) 변천 과정



나.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 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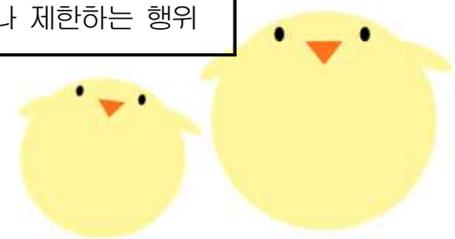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

1)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 개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2)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 개념: 사람으로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폭력 은폐사실을 알려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 라고 말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3)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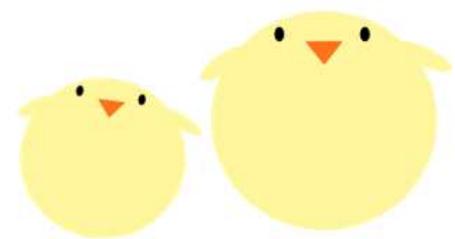
1. 개념: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당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 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 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4) 모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 개념: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5)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 개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1.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범죄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교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1. 개념
 -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 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8)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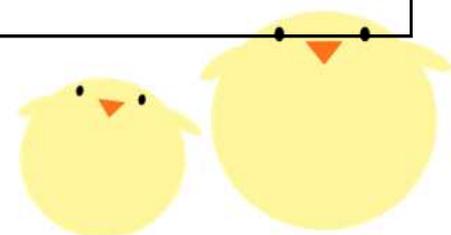
1. 개념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9)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개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시간 중 교사에게 “가슴이 없어서 등 인줄 알았어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성적인 물건(피임용품)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교탁 위에 놓거나 교사의 동선상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

1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 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려’,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 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1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1. 개념: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이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3.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개정 교원지위법이전 <시행일(2019. 10. 17)이전>	개정 교원지위법이후 <시행일(2019. 10. 17.)>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교원지위법」17조
가능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㊸ 학교내외봉사 ㊸ 사회봉사 ㊸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30일 이내의출석정지 ⑤ 퇴학처분(퇴학처분은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적용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㊸ 학교에서의봉사 ㊸ 사회봉사 ㊸ 학내외전문가여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처분은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적용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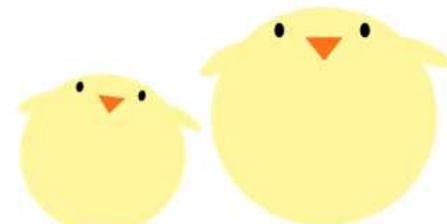
● 조치 결정 시 세부 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정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 관계 회복 정도,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나.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고소·고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통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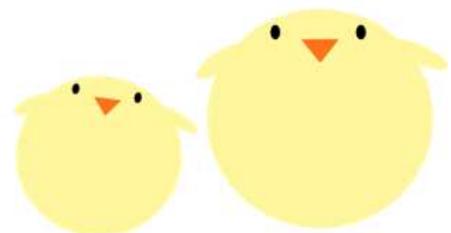
9. 2021학년도 학사일정

2021학년도 상반기

■ 휴업일·방학, ■ 공휴일, ■ 행사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월) ▶ 삼일절	1 (목)	1 (토) ▶ 토요휴업일	1 (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주간	1 (목)	1 (일)
2 (화) ▶ 시업식(2~6학년) ▶ 입학식(1학년)	2 (금)	2 (일)	2 (수) ▶ 흡연예방교육	2 (금)	2 (월)
3 (수)	3 (토) ▶ 토요휴업일	3 (월) ▶ 학교장 재량휴업일	3 (목)	3 (토) ▶ 토요휴업일	3 (화)
4 (목)	4 (일)	4 (화) ▶ 학교장 재량휴업일	4 (금)	4 (일)	4 (수)
5 (금) ▶ 학급어린이회조직 (4~6학년)	5 (월)	5 (수) ▶ 어린이날	5 (토) ▶ 토요휴업일	5 (월) ▶ 양성평등주간	5 (목)
6 (토) ▶ 토요휴업일	6 (화)	6 (목)	6 (일) ▶ 현충일	6 (화)	6 (금)
7 (일)	7 (수)	7 (금)	7 (월) ▶ 통일교육 주간	7 (수)	7 (토) ▶ 토요휴업일
8 (월)	8 (목)	8 (토) ▶ 토요휴업일	8 (화)	8 (목)	8 (일)
9 (화)	9 (금)	9 (일)	9 (수)	9 (금)	9 (월)
10 (수)	10 (토) ▶ 토요휴업일	10 (월) ▶ 1학기 친구사랑주간	10 (목)	10 (토) ▶ 토요휴업일	10 (화)
11 (목)	11 (일)	11 (화)	11 (금)	11 (일)	11 (수)
12 (금)	12 (월) ▶ 학교폭력예방교육	12 (수)	12 (토) ▶ 토요휴업일	12 (월)	12 (목)
13 (토) ▶ 토요휴업일	13 (화)	13 (목)	13 (일)	13 (화)	13 (금)
14 (일)	14 ▶ 교내육상대회 (3~6학년)	14 (금)	14 (월)	14 (수)	14 (토) ▶ 토요휴업일
15 (월) ▶ 1학기 학생상담주간	15 ▶ 진로적성검사 (5~6학년)	15 (토) ▶ 토요휴업일	15 (화)	15 (목)	15 (일) ▶ 광복절
16 (화)	16 (금) ▶ 정보통신윤리교육	16 (일)	16 (수)	16 (금)	16 (월)
17 (수)	17 (토) ▶ 토요휴업일	17 (월)	17 (목)	17 (토) ▶ 토요휴업일	17 (화)
18 ▶ 전교어린이회 후보자 (목) 소견발표 (4~6학년)	18 (일)	18 (화)	18 (금)	18 (일)	18 (수)
19 ▶ 전교어린이회 조직 (금) (4~6학년)	19 (월)	19 (수) ▶ 석가탄신일	19 (토) ▶ 토요휴업일	19 (월)	19 (목)
20 (토) ▶ 토요휴업일	20 (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20 (목)	20 (일)	20 (화)	20 (금)
21 (일)	21 (수) ▶ 과학의 달 행사	21 (금)	21 (월) ▶ 다꿈교육주간	21 (수)	21 (토) ▶ 토요휴업일
22 (월) ▶ 1학기 학부모상담주간	22 (목)	22 (토) ▶ 토요휴업일	22 (화)	22 (목)	22 (일)
23 (화)	23 (금)	23 (일)	23 (수)	23 (금)	23 (월) ▶ 여름방학식
24 (수) ▶ 학교교육과정설명회	24 (토) ▶ 토요휴업일	24 ▶ 진로코칭주간 (5~6학년)	24 (목)	24 (토) ▶ 토요휴업일	24 (화) ▶ 여름개학식
25 (목)	25 (일)	25 (화)	25 (금)	25 (일)	25 (수)
26 (금)	26 ▶ 독도교육주간 ▶ 인권사랑 어울림 한마당 주간	26 (수)	26 (토) ▶ 토요휴업일	26 (월)	26 (목)
27 (토) ▶ 토요휴업일	27 (화)	27 (목)	27 (일)	27 (화)	27 (금)
28 (일)	28 (수)	28 (금)	28 (월)	28 (수)	28 (토) ▶ 토요휴업일
29 (월)	29 (목)	29 (토) ▶ 토요휴업일	29 (화)	29 (목)	29 (일)
30 (화)	30 (금)	30 (일)	30 (수)	30 (금)	30 (월)
31 (수)		31 (월)		31 (토) ▶ 토요휴업일	31 (화)

◆ 1학기 수업일수: 100일 ◆ 여름방학: 7.26~8.23(29일)



2021학년도 하반기

■ 휴업일, 방학, ■ 공휴일, ■ 행사일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수) ▶독서의 달 행사	1 (금)	1 (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주간	1 (수)	1 (토) ▶신정	1 (화) ▶설연휴
2 (목)	2 (토) ▶토요휴업일	2 (화)	2 (목)	2 (일)	2 (수) ▶설연휴
3 (금)	3 (일) ▶개천절	3 (수) ▶장애인식개선교육	3 (금)	3 (월)	3 (목)
4 (토) ▶토요휴업일	4 (월)	4 (목)	4 (토) ▶토요휴업일	4 (화)	4 (금)
5 (일)	5 (화)	5 (금)	5 (일)	5 (수)	5 (토) ▶토요휴업일
6 (월) ▶2학기 학생상담주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6학년) 6 (수) ▶현장체험학습(1,2학년) ▶현장체험활동(3~5학년)	6 (토) ▶토요휴업일	6 (월)	6 (목)	6 (일)
7 (화)	7 ▶테마식 현장체험학습(6학년)	7 (일)	7 (화)	7 (금)	7 (월)
8 (수)	8 (금)	8 (월) ▶스포츠클럽 리그주간	8 (수)	8 (토) ▶토요휴업일	8 (화)
9 (목)	9 (토) ▶한글날	9 (화)	9 (목)	9 (일)	9 (수)
10 (금)	10 (일)	10 (수) ▶꿈 자랑 끼 자랑	10 (금)	10 (월)	10 (목)
11 (토) ▶토요휴업일	11 (월)	11 (목)	11 (토) ▶토요휴업일	11 (화)	11 (금)
12 (일)	12 ▶119안전체험학습(6학년)	12 (수)	12 (일)	12 (수)	12 (토) ▶토요휴업일
13 ▶학교폭력예방교육(월) ▶2학기 학부모상담주간	13 (수) ▶소방대피훈련	13 (토) ▶토요휴업일	13 (일)	13 (목)	13 (일)
14 (화)	14 (목)	14 (일)	14 (화)	14 (금)	14 (월)
15 (수)	15 (금)	15 (월)	15 (수)	15 (토) ▶토요휴업일	15 (화)
16 (목)	16 (토) ▶토요휴업일	16 (화)	16 (목)	16 (일)	16 (수)
17 (금)	17 (일)	17 (수)	17 (금)	17 (월)	17 (목)
18 (토) ▶토요휴업일	18 (월)	18 (목)	18 (토) ▶토요휴업일	18 (화)	18 (금)
19 (일)	19 (화)	19 (금)	19 (일)	19 (수)	19 (토) ▶토요휴업일
20 (월) ▶추석연휴	20 (수)	20 (토) ▶토요휴업일	20 (월)	20 (목)	20 (일)
21 (화) ▶추석연휴	21 (목)	21 (일)	21 (화)	21 (금)	21 (월)
22 (수) ▶추석연휴	22 ▶정보통신윤리교육	22 (월)	22 (수)	22 (토) ▶토요휴업일	22 (화)
23 (목)	23 (토) ▶토요휴업일	23 (화)	23 (목)	23 (일)	23 (수)
24 (금)	24 (일)	24 (수)	24 (금)	24 (월)	24 (목)
25 (토) ▶토요휴업일	25 (월) ▶독도의 날(5,6학년)	25 (목)	25 (토) ▶성탄절	25 (화)	25 (금)
26 (일)	26 (화)	26 (금)	26 (일)	26 (수)	26 (토) ▶토요휴업일
27 (월)	27 (수)	27 (토) ▶토요휴업일	27 (월)	27 (목)	27 (일)
28 (화)	28 (목)	28 (일)	28 (화)	28 (금)	28 (월)
29 (수) ▶학부모 공개수업	29 (금)	29 (월)	29 (수)	29 (토) ▶토요휴업일	
30 ▶119안전체험학습(목)(2,3,5학년)	30 (토) ▶토요휴업일	30 (화)	30 ▶졸업식(6학년) ▶종업식(1~5학년)	30 (일)	
	31 (일)		31 (금)	31 (월) ▶설연휴	

◆2학기 수업일수: 90일 ◆연간 수업일수: 190일 ◆겨울방학: 12.31~2.28(60일)

